

등록번호	정책기획담당관-3133
등록일자	2015.3.2.
결재일자	2015.3.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정책평가팀장	정책기획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
이병찬	이남희	임근래	조인동	03/02 문석진
협 조	주민자치국장 규제개혁팀장 주무관	이경현 代김오녀 김오녀		

「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개정 계획

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위원의 구성, 제척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「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개정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3조	정책기획담당관	행정규제심사	개선권고내용 반영	-
	감사담당관	부패영향평가	개선권고내용 일부반영	
	여성가족과	성별영향분석평가	개선권고내용 반영	

서 대 문 구
정책기획담당관

□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사무 중,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

□ 개정이유

-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, 비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 등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정성 및 합리성 제고
- 신규 민간위탁 시에만 의회동의를 받도록 변경하여 민간위탁 업무 처리절차의 효율성 및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 확보
-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조항 신설하고, 운영 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신설·변경하여 투명성 및 객관성·공정성 강화

□ 주요 개정내용

- 제명 변경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→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민간위탁 추진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
-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을 위한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(안 제6조)
-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 ~ 제9조)
- 위원회 제척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10조)
-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, 협약체결,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11조 ~ 제14조)
- 지도·점검 및 감사,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16조 ~ 제19조)
- 위탁의 취소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 (안 제20조 ~ 제21조)

□ 추진 일정

- 입법예고 : '15. 3.3 ~ 3.23 (20일간)
 -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및 법제심사 결과 반영
-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 : '15. 3월 중
- 서대문구의회 의결 : '15. 4월 중
- 공 포 : '15. 5월 중
- 시 행 : '15. 9. 1.

※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에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둠

- 붙임 1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전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